

정책보고서 2003-72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기준 연구

변용찬 윤상용
박성민 박을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장애인들의 교육, 직업,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손상된 신체 일부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운동성을 증진시켜 장애인 스스로 주위 환경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최대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함.
- 인구의 고령화 및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해 장애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및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관련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하여 수요자인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저렴한면서도 질 높은 재활보조기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활보조기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생산 및 판매 현황, 운영 및 경영 실태 등이 파악되어야 하나, 몇몇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체 수도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재활보조기구 업체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수립한 1차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1998~2002)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현행 장

애인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지원은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함.

- 첫째,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 및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 둘째, 국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생산 및 수입 현황, 운영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며,
- 셋째,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근거로서 양질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업체를 판별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 업체 평가 지표 개발하며,
-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지침 마련하는데 있음.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각 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와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특징
-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보조기구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각종 법률과 제도
- 1995/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통해 국내 재가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 실태 및 수요 파악
- 국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자산 및 매출 현황, 생산 및 판매 현황, 종사자 현황, 수출입 현황, 연구개발 현황,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 전문의와 재활보조기구업체 운영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의 재활보조기구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별 향후 수요 파악

-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 및 재활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
- 경영실적,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를 판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우수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건의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재활보조기구업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기존 자료분석, 전문가 간담회 실시
 - 문헌연구: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재활보조기구 관련 제도 및 법률, 재가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 실태 및 수요, 그리고 외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 현황 및 관련 지원 정책의 고찰은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함.
 - 실태조사: 국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실태 파악은 현 시점에서 파악이 가능한 재활보조기구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 수요 전망을 위한 전문가집단 우편 설문조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보장구 관련 전문의, 재활보조기구 업체 운영자,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3,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기존 자료분석: 재가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실태 및 수요추정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와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함.
 - 전문가 간담회: 재활보조기구업체 실태 조사와 재활보조기구 수요 전망을 위한 전문가 조사의 조사표 개발 및 조사결과 활용 방안, 재활보조기구업체 평가지표 개발,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진, 전문의, 재활보조기구업체 운영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제2장 재활보조기구의 주요 개념 및 관련 제도

제1절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및 특성

1.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 재활보조기구란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유지시키고,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물건, 장비의 부분, 제품, 혹은 설비를 의미함.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공식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Technical Aids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장애(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방지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으로 정의함.
 - 미국은 재활보조기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ABLEDATA에 따르면, 미국의 재활보조기구에는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낮은 기술 수준(low-tech)의 제품에서부터 계단을 오르는 휠체어 같은 첨단 기술 수준(high-tech)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총 2만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망라함.
 - 일본에서는 재활보조기구를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로 정의함.
 - 의지는 상지 또는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손이 있는 자가 그 결손을 보완하거나 또는 그 결손에 의해 상실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의 기구나 기기임.
 - 장구는 상지 또는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체간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착용하여 당해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의 저하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을 보완할 목적의 기구나 기기임.
 - 자조구는 장애인이 자립해 갈 때 신체처리동작이나 가벼운 작업을 위해 도안된 도구류를 의미함.
 - 최근 일본에서는 생활용구 및 재활보조기구를 총칭하여 ‘복지용구’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 복지용구란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지장이 있는 노인 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이들의 기능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용구 및 재활보조기구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는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함.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의 중요성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사회전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장애인 당사자 측면에서 재활보조기구는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며,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위한 핵심요소가 되며, 사회전체 측면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이러한 재활보조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보조기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의 소득이 매우 낮아 구입하기가 어렵고, 공적 재활보조기구급여제도의 급여 품목이 협소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의 종류, 기능,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가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규모의 재활보조기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품질이 대체적으로 낮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2.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체계 및 종류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분류의 국제적 기준은 북유럽분류체계(Nordic Classification System on Aids for Disabled Persons)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각국 분류체계의 기준임.
 - 국제표준화기구는 1989년 국제규격시안(ISO/DIS)을 완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여 1992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분류법(Technical Aids for Disabled Persons: ISO 9999)을 제정함.
 - 일본은 1990년부터 재단법인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주관으로 ‘복지기기 정보 제공 시스템(TAIS: Technical Aid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실시하면서 ISO/DIS 국제

규격안을 토대로 1995년 ‘일본복지용구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 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함.

-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활보조기구 이외에 치료훈련용구, 가정용구, 교육용구, 오락기구 등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기기, 물품들과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를 제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999 체계를 참고하여 2002년 9월 보건복지부 고시 2002-66호를 통해 분류체계를 확립함.
 -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의하면, 대분류에는 치료훈련용구 등 10종이 지정되었으며, 중분류에는 호흡기 치료용구 등 72종이, 소분류에는 인공호흡기 등 231종이 지정됨.

제2절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특성

1. 기술수준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

- ☐ 재활보조기구는 범주에 포함되는 품목들의 다양성만큼이나 개별 품목의 생산에 투입되는 기술 수준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목발이나 지팡이 등의 단순한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지만, 컴퓨터 기기나 전동 휠체어 같은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품목임.
 -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 반면, 의지나 보조기 같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제품의 규격이 달라지는 제품은 대량 생산을 하기가 어렵기에 소량의 제품을 맞춤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음.

2.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 ☐ 재활보조기구는 타 산업의 제품과는 달리 시장규모는 적으나 비교적 수요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장기적인 전망에서 재활보조기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

장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인구의 고령화 및 장애범주의 확대에 의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재활보조기구의 출현,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재활보조기구 보급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것임.

3. 생산 및 판매업체의 영세성

□ 재활보조기구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 업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248개 업체 중 198개소(79.8%)가 개인설립업체이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업체가 152개소(61.3%), 종사자 수는 평균 6.3명으로서 2명 이하인 업체도 99개소에 이르고 있음.
- 대부분의 업체가 자본 부족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00년에 상무부가 실시한 재활보조기구 산업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업체의 60%가 직원 10인 미만임.

4. 이중적 유통구조

□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구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 및 수입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직거래형태와 판매전문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간접거래형태로 이원화되고 있음.

- 주로 의지나 보조기 같이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함.
- 일반제조업 품목들처럼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휠체어 같은 품목은 생산과 판매가 비교적 분리되어 있음.

제3절 재활보조기구 관련 제도 및 법률

1. 품질관리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고시를 하

도록 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후 2002년 9월 보건복지부 고시 2002-66호를 통해 분류체계를 확립함.

-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에 관한 표준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서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고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서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약사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현재 보장구와 의료용구(보청기, 휠체어가 포함되어 있음) 제조업 및 제조품목을 허가 및 관리하고 있음.

2. 급여제도 및 보급사업 현황

□ 재활보조기구 보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음.

- 첫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훈처 등 사회보험기금 및 조세를 재원으로 한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가 있음.
- 둘째, 일부 저소득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있음.
- 이 외에 재활보조기구 보급의 또 다른 주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장애인편의시설추진시민연대 등 사회복지 관련 민간 기관들도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음.

□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의 연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 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도에는 6,486백만원(22,150건), 2002년도에는 6,686백만원(24,560건) 지출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2,609백만원(7,423건) 지출
-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341백만원(3,772건), 2002년도에 882백만원(5,951건) 지출
- 보훈병원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3,213백만원(9,396건), 2002년도에는 3,465백만원

(9,558건) 지출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를 구입 또는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교부해 왔으나, 이들 품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에는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여 보급 중에 있음.
 - － 교부대상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임.
 - － 2003년에는 1,440 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국고 74%, 지방비 26%로 편성됨.
 - － 5년간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총 37,725명이며, 2003년에는 13,600명이 지급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3년에 4,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신키종 PC, 시각장애인용 음성낭독 S/W(스크린리더) 및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 마우스 스틱, 발 마우스 등 특수입력장치를 9,950명에게 교부함.
 - － 보급대상은 장애 1~3등급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며, 완전 무상방식이 아닌 20%내외를 본인이 부담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활보조기구 보급사업은 장애인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간접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무선신호기, 점자프린터 등 다양한 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24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 장애인관련 민간 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업체 및 지원단체 등의 후원금을 통한 지원, 자부담 등을 통해 재활보조기구를 보급하고 있음.
 - － 보급품목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와 정보 및 방송접근을 돕는 정보통신 신호기기(TV자막수신기, 화면읽기소프트웨어) 중심임.

3. 재 확보조기구업체 지원제도

- ☐ 일반기업체에 관한 지원정책으로는 조세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기술신용 보증지원, 구매지원, 기술정보지원, 기술인력양성확보지원, 협동연구촉진, 중소기업기술지원, 기술 개발촉진 지원시책, 연구개발조직의 육성 등이 있으며,
- ☐ 특히 재 확보조기구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에서 지원 하고 있음.

가. 일반기업체 금융·세제 지원내용

- ☐ 조세지원제도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연구개발 및 상업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 개발단계에서는 관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상업화단계에서는 특소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각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 자금지원은 보조지원, 투·융자지원, 융자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조지원은 주로 연구 개발사업의 형태로, 투·융자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창업 투자자의 벤처지원의 형태로, 융자지원은 한국산업은행·산업자원부가 주로 하며 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독자적형태 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본 제도에 의해 99년에 지원된 금액은 3조 7천억에 이 르고 있음.
 - 지원절차는 해당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면,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등 의 과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이루어짐.
- ☐ 구매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청, 기술개발중소기업,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지원행 위를 말함.

- ☐ 기술정보지원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식기반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양적 생산 중심의 구조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운 반면, 기술관련 지식과 정보 활용도는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 기술인력양성확보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의 인프라부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결과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근래에 들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 바에 힘입어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간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수탁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연구원기업체 파견 근무지원 및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촉진 등을 장려하며 정보 통신부, 산업자원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서도 기술지원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음.
- ☐ 기술개발자의 연구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산신기술인정제도(KT마크), 장영실상 등의 제도가 시행하고 있음.
- ☐ 기업의 연구개발기획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지원과 같은 제도들이 있으며 산학연의 교류 및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재단에서는 연구회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1)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재활보조기구 업체에게 생산장려금 지급, 개발보급, 용자 및 기술 지원, 우수업체지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조 및 지원 대상(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5조 자금의 용자 및 보조))

-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황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2) 연구개발 지원

-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재활보조기구연구개발의 지원)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자금을 보조하며 육성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관세 및 조세감면

-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 경감과 업체(소)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 적용됨.
- ☐ 관세법(제26조6 특정물품 감면세)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20조5에서 특정면세대상물품들 중 목적별로 장애인이 사용해야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을 고시함.
 - 감면율 : 해당 관세 액의 전액 면제

제3장 국내 재활보조기구 공급 실태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내용

- ☐ 조사표는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단체, 한국보장구협

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 조사내용은 일반사항(설립형태, 연도, 총면적, 총자산, 생산·판매형태), 생산·수입 및 판매(생산·수입품 출하액, 2002년 제작·판매수량, 판매 및 거래처),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비율, 향후 투자계획, 정부 연구지원사업 참여 현황, 기술이전전략, 자체개발 현황,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기술원천), 수출 및 수입, 고용, 기타사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조사기간

- 조사는 2003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이루어졌으며, 조사표와 반송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로 발송을 확인하고 반송을 독려하였음.

3. 조사대상

- 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판매·수입하는 업체로, 한국보장구협회에 등록하고 있는 회원업체를 포함하여 비회원 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들임.
 - 회원업체는 주로 의지, 보조기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업체는 휠체어, 보청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로 선정함.
- 총 374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99부를 회수
 - 회수되지 않은 상당수의 업체가 주소 변경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조사표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임.

제2절 국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실태

1. 설립형태 및 설립년도별 업체수

-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관련업체의 설립형태를 보면 전체 73.2%가 개인이 설립한 형

태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법인이 22.7%, 조합 및 기타법인이 2.1%임.

- 업종별로 보면,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의지·보조기업체의 94.2%가 개인이 설립한 반면, 휠체어, 보청기, 특수기관업체는 대체로 회사법인의 형태로 설립됨.

- ☐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설립시기를 보면 1980년대(34.7%),1990년대(39.8%)에 설립된 업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970년대, 2000년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산업규모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업소 총면적을 살펴보면 100㎡ 이하 수준의 업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재활보조기구 업체들의 총 자산을 보면 5천만원 미만의 업체가 29.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업체가 26.5%를 차지하여, 1억원 미만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업체의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84.2%로 나타났고, 의지·보조기업체는 84.8%, 휠체어업체는 90.0%, 보청기업체는 62.1%, 특수기관업체는 83.5%, 기타업체는 96.25%로 나타났음.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2002년 생산품출하액의 평균은 3억 5천1백만원, 수입품출하액(매출액)의 평균은 2억 5천만원, 순이익은 약 5천9백만원이었음.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순이익은 5천만원 미만이 70.0%인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지·보조기 업체와 보청기 업체의 순이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재활보조기구업체 생산·판매형태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생산형태를 완제품, 반제품, 부품가공, 판매만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때, 응답한 업체의 56.0%가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판매형태에 있어서는 도소매 판매가 57.1%, 소매판매가 32.7%로서 소매가 88%를 차지함.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판매 및 거래처를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형

태가 32.7%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25.9%, 종합병원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고용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업체가 64.8%로 나타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 평균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특수기관업체가 34.3명, 보청기업체 7.27명, 의지·보조기업체가 6.3명이고, 특성별 평균 종사자수를 보면 재활보조기구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기술자는 평균 2.15명, 사무직 1.01명, 단순생산직 0.88명, 연구개발직과 판매직은 0.69명, 무급가족종사자는 0.16명임.
- ☐ 업체 종사자의 직원채용방법은 공채 43.3%, 소개 25.7%, 자체양성 18.8%임.
- ☐ 업체 종사자의 학력은 대학원이상 졸업자가 4.5%, 대학교 졸업자가 35.5%, 고등학교 졸업자가 53.2%, 중학교 졸업 이하가 6.7%이고, 종사자의 경력은 7년 이상 경력이 54.4%, 3-6년 경력이 26.3%, 2년 이하의 경력이 19.3%임.
- ☐ 업체 종사자의 급여는 평균 101만원에서 200만원사이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5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만원에서 300만원이 20.6%, 100만원 이하가 18.6%, 301만원 이상이 10.6%의 순으로 나타남.
- ☐ 업체 종사자의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소지여부를 살펴보면 평균 37.4%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기관업체 종사자의 소지비율이 83.3%로 가장 높음.

5. 수출입 현황

- ☐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업체 중 대부분은 생산과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수출을 하는 업체는 전체 업체 중 10.0%로 나타났으며, 주로 휠체어업체의 수출 비율이 높았음.
- ☐ 재활보조기구 업체 중 외국에서 재활보조기구를 수입만 하는 업체는 3.3%이고,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가 38.0%, 생산만 하는 업체가 29.8%임.

6.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 ☐ 재활보조기구업체 중 2002년에 연구개발 또는 설비에 투자한 업체는 전체의 44.9%였으며, 이 중 특수기관업체의 비율이 높았음.
 -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19.6%, 설비 투자비율은 12.3%로 나타났고, 특히 특수기관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216.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도 재활보조기구업체의 평균 순이익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21.2%, 평균 순이익대비 설비투자비율은 13.1%로 나타났음.
 - 정부의 연구지원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연구개발 중인 업체는 전체 업체 중 10.8%였으며, 업종별로 보았을 때 특수기관업체의 비율이 높았음.
- ☐ 재활보조기구업체가 직접 개발한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업체의 36.6%가 자체개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휠체어업체와 특수기관업체의 자체개발품 비율이 높았음.
 - 자체개발품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2개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를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에 의해 분류한 결과 의지·보조기 관련(40.5%), 이동기기 관련 (36.5%)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각 업체들의 재활보조기구 기술원천에 대해서는 기존기술의 개량 및 개선이 61.5%로 가장 많았고, 창조적 기술과 외국기술의 모방이 각각 16.5%로 나타났음.
- ☐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선진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해외연수(38.0%), 외국기술자초빙(32.4%)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업체 운영상의 어려움

- ☐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업체 중 32.6%가 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재활보조기구업체들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창업 전에는 자금조달(47.2%), 판로개척(23.6%), 행정절차(13.9%)의 순으로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 후에는 판로개척(41.2%), 자금조달(29.4%), 인력확보(16.2%)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 현재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활보조기구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고(15.9%), 시설·설비가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으며(15.5%), 시장이 협소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15.5%), 생산업체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이 없음(14.1%)을 지적하였음.
- ☐ 재활보조기구 산업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생산업체의 시설 및 설비지원(20.2%), 연구개발비 지원(14.2%), 전문인력 양성(12.1%)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제4장 국내 재활보조기구 수요추정

제1절 재가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 실태

1. 재가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 실태

-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전체 재가장애인 중 39.6%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청각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의 순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 재활보조기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종류
 - 지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가 53.9%로서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목발(21.1%), 수동휠체어(15.8%)의 순으로 나타남.
 - 그밖에 보조기는 13.7%, 의지는 8.0%의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전동휠체어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음.
 -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는 안경·콘택트렌즈로서 59.2%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흰지팡이

22.6%, 의안 7.7%의 순으로 나타남.

- 청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언어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인 인공후두는 극히 미미한 소지율을 나타냄.

-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적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6.4%,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는 14.5%로 전체적으로 71% 정도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2. 재가 장애인의 필요 재활보조기구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나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11%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인이 18.0%로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청각장애인(15.5%)과 지체장애인(12.5%)도 비교적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향후 필요로 하는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지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 전동휠체어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지팡이(18.2%), 수동휠체어(17.7%)도 비교적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 가장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으며,
- 그 밖의 이유로는 ‘사용이 불편하여’ 9.8%, ‘나에게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선택하지 못해서’ 8.6%, ‘미관상 흠해서’ 8.1%, ‘구입처를 몰라서’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2절 재활보조기구 수요 전망 조사 결과

1. 전문의의 수요 전망

- ☐ 전문의들은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휠체어의 수요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임.
- ☐ 건강보험 비급여품목에 대한 수요는 전동휠체어, 욕창방지용품, 보행기, 대소변 처리용구, 세면·목욕용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수요전망

- ☐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의와는 달리 의지·보조기의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보조기에 있어서는 척추보조기를 제외한 다른 보조기의 수요는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경우 향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보청기임.
- ☐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 중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전동휠체어로서 전체 업체의 61.9%가 전동휠체어의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 다음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품목은 혈압계 58.0%, 스쿠터 48.3%, 욕창방지용품 40.4%, 세면·목욕용품 40.0%의 순으로 나타났음.

3. 장애인 단체의 수요전망

- ☐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 장애인단체가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 중 향후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

품목은 전동휠체어로서 응답한 모든 장애인단체가 이를 지적하고 있음.

-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스쿠터로서 전체 단체의 87.5%가 응답함.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 ☐ 전문의와 장애인단체는 조사에 포함된 대부분의 품목이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재활보조기구업체는 현재의 수요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품목이 많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재활보조기구 업체가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데, 즉, 의지·보조기 제작업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 또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첨단 제품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선호 및 잠재 수요를 국내 재활보조기구 업체들이 흡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 또한 품목별 수요 전망 결과와 관련해서,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동휠체어가 향후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지적되었음.
 - 향후 건강보험 급여 품목 확대 시 전동휠체어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구, 복막투석기, 대소변 처리 용구 등의 비급여 품목도 향후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들 품목 또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절 재활보조기구 수요추정

- ☐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합하면 약 708.4천명으로서 결국 이들이 재활보조구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품목별 재활보조기구 수요를 현행 건강보험 내구연한으로 나누어 연간 재활보조기구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 결과 상지의지는 연간 약 3.9천건, 하지의지는 약 3.2천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척추보조기는 8.1천개, 상지보조기는 2.1천개, 하지보조기 11.8천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밖에 수동휠체어는 연간 15.5천개, 안경·콘택트렌즈는 26.9천개, 흰지팡이는 30.6천개, 그리고 보청기는 26.1천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한편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인 정형외과용 구두와 전동휠체어의 경우 각각 산재보험의 해당 내구연한인 2년과 6년을 적용할 경우 연간 수요량은 정형외과용 구두가 6.4천개, 전동휠체어는 6.7천개인 것으로 추정함.
- 2001년과 2002년의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지급 실적을 살펴 본 결과, 2001년에는 총 22천명, 2002년도에는 이보다 10.8% 증가한 24.4천명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5장 외국의 재활보조기구 산업 실태 및 관련 지원 정책

제1절 미국

1. 미국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 실태

-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재가 장애인 수는 약 49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2억 5720만명의 19.3%에 달하는 수치로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장애인임.
 - 2001년 현재 약 5960만명인 5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는 1억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는데(U.S. Commerce, 2003),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 출현율이 높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마찬가지로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장애인은 약 16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약 840만명의 장애인이 목욕, 옷입기, 먹기, 걷기, 외출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기초적인 일상생활수행(ADLs)에 있어서 재활보조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 약 1540만명의 장애인이 장루 주머니(ostomy bags), 혈당측정기(glucose monitors), 흡입용 마스크(inhalers), 호흡기(nebulizers), 보청기, 목발, 보행기, 휠체어, 스쿠터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Carlson 외, 2001).

2.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산업 현황

-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 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생산되는 재활보조기구의 종류가 18,000여 가지가 넘는데다가 소비자의 특성도 매우 다양한데서 비롯된 것임.

가. 시장 규모 및 향후 수요

-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고령화는 향후 몇 십 년 간 재활보조기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이는 보청기와 지팡이, 고성능 휠체어, 장애인용 자동차 그리고 개인용 의사소통기기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BI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재활보조기구산업의 총 매출액은 1999년 현재 28.7억 달러로서 1997년의 23.5억달러에 비해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국내 총 매출액은 23.2억달러로서 전체 매출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액은 5.5억달러로서 유럽, 캐나다·멕시코, 아시아 등이 주요 수출국인 것으로 파악됨.

나. 미국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실태

1)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유형

- ☐ 미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은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생산, 조립, 판매, 보급, 제품 시험 및 경영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들을 포함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업체들은 제품의 생산, 조립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재활보조기구업체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는 이동 기기로서 전체 업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지·보조기가 12.2%, 일상생활용품이 12%, 그리고 의사소통 기기가 10.4%인 것으로 나타났음.

2) 판매

- ☐ 1997년 이래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활보조기구업체들의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7년에 134.5백만달러였던 순이익은 1999년에는 162.2백만달러로 20.6%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증가율 22%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 그러나 이러한 순이익의 증가는 매출액의 경우와 같이 전체 재활보조기구업체의 10%에 불과한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다. 미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1) 관련 법률

- ☐ 1988년에 제정된 재활보조기구법(The Assistive Technology Act)은 재활보조기구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제정),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1973년 제정) 및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75년 제정) 등의 법률이 있음.
- ☐ 재활보조기구법이 제정된 1988년 당시의 법률 명칭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

원법(The 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이었으며,

- 재활보조기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대신,
- 연방정부가 각 주(州)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주정부가 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활보조기구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임.
- 실제로 미국 내 50개 주정부는 재활보조기구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1999년에 이들 주정부가 지원받은 보조금 액수는 약 30백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은 많은 기업들과 대학으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작업장 및 캠퍼스 내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1992년 개정을 통해서도 작업장 내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직업재활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 설정 및 재활공학연구센터의 연구개발 능력 강화 등이 이루어졌음.

□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 각종 편의시설 및 재활보조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든 원거리통신 서비스에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음.

□ 1990년에 개정된 장애인교육법은 장애 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교육 재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해당 학교가 지급하도록 하였음.

2) 연구개발 지원 제도

□ 미국의 재활보조기구산업 연구개발 지원 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의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사업과 재활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제도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은 업체의 영세성 및 연구개발비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재활보조기구관련 연구개발을 연방정부가 직접 수행하여
추후 재활보조기구업체가 이를 자유롭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개발비 지원제도는 연방정부가 소정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국립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재활보조기구 관련 연구개발비 규모는
1998년에 79.3백만달러에서 2000년에는 116백만달러로서 46%가 증가함.

-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8.6백만달러의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비
중에서 900,000달러를 재활보조기구관련 분야에 지출함.
-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장애·재활연구소를 통해 2000년에 15.7백만달러를 재활보
조기구 관련 연구개발비로 지출함.
- 보훈처(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5.6백만달러의 연구비를 지출함.

□ 연방정부에서 재활보조기구업체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중 가장 규모가 큰 제도는 ‘중
소기업청(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주관하는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지원제
도(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임.

- SBIR 프로그램은 198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발전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
를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10개 연방정부 기관
의 연구개발비 예산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간 총 181개 재활보조기구업체가 SBIR에 응모하여 이
중 8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금액은 1996년에 6.4백만달러,
1997년에 8.9백만달러, 그리고 1998년에는 8.7백만달러로 나타났음.

3)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 미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함.

-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의한 공적 급여제도
 -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적 급여제도
- 메디케어의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는 파트B인 보충적 의료보험의 급여 중 하나로서 1989년에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음.
- 메디케어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2003년 현재 총 2,421개 품목으로서 여기에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장착훈련·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음.
 -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는 해당 급여 품목에 한하여 실제 가격(Actual Charge)과 메디케어 수가(Fee Schedule)를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의 80%를 메디케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임.
 - 2002년 현재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총 지출액은 98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인 의료용 재활보조기구가 70억달러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조기구가 12억달러(13%), 그리고 의지·보조기가 9억달러(9%), 기타 보조기구가 7억달러(7%)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2절 일본

1. 일본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실태

- 일본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1996년 현재 약 293만 명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은 맹인용 지팡이(20.0%), 안경(10.5%), 점자기기(5.9%)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고,
 - 청각·언어장애인은 보청기(54.9%), 보행지팡이(3.1%), 인공후두(1.7%), 휠체어(1.7%)를 사용하고 있었음.
 - 지체장애인은 보행지팡이(22.%), 휠체어(16.1%), 보조기(12.5%)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고,
 - 내부장애인은 장루용품(8.5%), 보행지팡이(4.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2. 일본의 재활보조기구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향후수요

-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활보조기구, 즉, ‘보장구’에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공용품’ 개념이 부가되어 복지용구라는 용어자체를 확장시켰음.
 - 그 결과 일본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 장애나 기능저하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2003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복지용구 시장규모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용구의 시장규모는 전체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기, 퍼스널케어기기, 의지·보조기가 차지하는 시장규모가 전체 복지용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01년 현재 협의의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1조 1,927억엔으로 공용품을 포함한 광의의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3조 2,421억엔으로 추계되고 있음.

나. 일본의 재활보조기구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1) 관련 법률

- 일본에서는 1993년에는 후생성(후생노동성)과 통상성(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복지용구법을 제정함.
 - 제1조에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애자의 자립촉진 및 이러한 사람의 개호를 행하는 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조는 ‘복지용구란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 및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와 보장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제3조에 의하면, 후생노동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촉

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방침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됨.

- 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동향에 관한 사항
 - ②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 ③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사항
 - ④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자 및 시설 개설자가 해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중요사항
- 이렇게 해서 작성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방침(1993년 후생성 통상산업성 고시 제4호)’에 따라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주요 소관정부부처로 서로 긴밀하게 연계 협조하여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음.
- 기초연구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혹은 실용화 개발은 경제산업성에서 주로 다루고, 보급촉진은 후생노동성에서 주로 관장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부처의 긴밀한 연계협조가 강조되고 있음.

2) 연구개발 지원제도

- 경제산업성은 ‘복지용구법’에 기초하여 장애인·고령자 및 개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 내지 창의성이 있는 복지용구의 실용화를 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공모를 하여 개발비를 보조하는 복지용구실용화개발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지원으로 ‘HCR(Home Care & Rehabilitation Exhibition)’이라는 재활보조기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일본 최대의 복지기기 전문 전시회로서 매년 50개 이상의 외국기업들이 참여하였고, 2002년에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 미국 등 15개국에서 약 100여개의 국외업체가 참가하였음.
 - 전시품목으로는 이동기기 및 이동보조제품, 침대관련용품, 입욕용품, 화장실용품 및 기저귀, 일상생활용품, 통신기기 및 용품, 건축·주택설비, 시설용 설비, 재택관련시설서비스, 경영정보 시스템 등임.

- 그 외에도, 매년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여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를 습득케 하기 위해 일본복지기기협회(Japan Welfare Equipment Industries Association)의 지원이 있으며,
- 일본 내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전시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주최하는 ‘EU Gateway to Japan’,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서 매년 개최하는 수입품 중심의 전시회인 ‘American & European Unique Assistive Devices Exhibition’이 있음.

3)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

- ☐ 일본의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는 보험재정에 의해 급부(給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 체계임.

제3절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장애인구 및 출현율

- ☐ 유럽연합의 ‘1995년도 장애인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최저 9.3%에서 최고 15.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12%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듯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장애인 출현율이 상이한 이유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각 국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임.
 - 향후 유럽연합의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전망은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장래에도 꾸준히 지속되고, 연령과 장애 발생률간에 강한 정적(positive) 상관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

2. 유럽연합의 재활보조기구 수요 및 공급 현황

-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 중 재활보조기구관련 통계가 비교적 잘 구축

되어 있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총 8개국의 재활보조기구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살펴보았음.

□ 덴마크의 경우, 1999년도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공적 보조금 지출은 1987년의 15억크로나에서 1997년 20억크로나로 33%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9%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용 특수 재활보조기구(particularly personal device)의 시장규모는 6억크로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개인용 재활보조기구(personal device) 및 기술적 재활보조기구(technical device)의 시장규모는 각각 4억크로나와 6억크로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현재 기술적 재활보조기구(technical aids)를 이용하고 있는 프랑스 재가 장애인 수는 5,156천명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재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활보조기구는 이동기기로서 총 1,846천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루·요루용품(1,187천명), 의사소통기기(946천명) 등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의 재활보조기구 시장은 매우 분절되어 있고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프랑스 재활보조기구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독일의 경우, 2000년 현재 장애정도(Gdb)가 50 이상이 넘는 중증장애인은 약 663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중증장애인보다 장애정도가 덜 심한 장애인 140만명과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을 합하면, 독일의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독일의 재활보조기구업체는 지역단위에서 일부 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과, 전국단위에서 일반 소비자와 의료보험 등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 모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는 대기업들, 마지막으로 재활보조기구의 공급은 물론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로 구분할 수 있음.
 - 독일의 재활보조기구 시장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기존의 복잡한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 비용 절감 압력을 들 수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2000년 현재 장애인구는 6세 이상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262만명이 재가 장애인이고, 각종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17만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 이탈리아의 재활보조기구업체 수를 살펴보면, 생산업체가 336개소, 유통업체가 272개소, 판매 및 서비스업체가 2,215개소, 수리 및 서비스업체가 2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에서 수입하여 유통되는 재활보조기구 시장 규모가 국내 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2000년 현재 약 120만명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를 통해 각종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보조기구급여의 지급액 규모와 관련하여, 의료보험 등 공적 급여 지출액은 2000년 현재 약 6억 2,700만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민간 보험회사의 재활보조기구 급여 지출액은 약 1억 5,000만 유로,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급여 지출액은 약 7억 7600만 유로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 네덜란드 정부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스쿠터를 제공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47,660대(9302만유로)의 휠체어와 23,780대(7950만 유로)의 스쿠터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02년 건강보험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급여 지출액은 총 626억 8410만 유로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스페인의 경우, 1999년 현재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9%인 353만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재활보조기구 사용률은 전체 장애인의 약 50%로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스페인은 재활보조기구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서, 스페인에서 유통되는 재활보조기구 중 70%가 수입품이며, 스페인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30%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동기기·의지·보조기 등 주요 품목별 스페인의 재활보조기구의 시장 규모는 1억 3,100만유로로 추정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전체인구의 19%인 135만명이 기능장애(functional reduction)를 56만명이 이동 장애를, 16만 5천명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인구의 4~8%의 사람들이 읽기와 쓰기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스웨덴 정부가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약 20억 크로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의 재활보조기구 구입 실적을 살펴보면, 휠체어, 청각 기기 등 상위 10개 품목의 구입액이 13억 1730만 크로네로서 전체 재활보조기구 구입액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영국의 경우, 장애인은 전 인구의 15% 수준인 약 86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재활보조기구 이용 실태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약 400만명의 장애인이 국가보건의료서비스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영국의 재활보조기구 시장은 대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순익이 낮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제품의 기술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3. 유럽의 재활보조기구산업 관련 제도

□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지원제도로써 유럽연합은 TIDE(Technology Initiative for Disabled and Elderly people)를 비롯하여, ACTION(Assisting Carers using Telematics Intervention to meet Older persons Needs), CERTAIN(Cost effective rehab tech Through appropriate indicators), COST 219(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DAILY, EUSTAT(Empowering users through Assistive Technology), FACILE, HOME, PAM-AID, SAFE21, TELEMATE(Telematic Multidisciplinary Assistive Technology Education)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 각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를 지급 대상, 재원조달 방법, 지급 절차 등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는 국가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음.

— 첫 번째 유형은 덴마크와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형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사민 주의적 사회보장제도하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전문가 사정에 의한 객관적 필요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에 필

요한 재원은 조세로 조달됨.

- 두 번째 유형은 네덜란드와 독일 등 대륙유럽국가형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조합주의적 사회보장제도하에서 다양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세 번째 유형은 스페인 등의 지중해국가형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대개 등록장애인제도,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부조 등 다양한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를 통해 무료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급 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 네 번째 유형은 영국형으로서,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 및 지방정부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조세로 운영되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서는 주로 치료용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정부를 통해서는 가사 및 일상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음.
- 마지막 유형은 아일랜드형으로서, 아일랜드에서는 의료카드와 만성질환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무료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선단체 등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무료 혹은 일부 본인 부담의 방식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음.

제6장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기준

제1절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기준

1.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필요성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동 조 제2항에서는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보조기구 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동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 대상은 ①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②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그리고 ③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정은 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해 연구개발비용, 설비투자비, 기타 투자비 등을 융자 또는 보조해줌으로써, 재활보조기구를 개발·보급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 － 이는 결국 장애인이 양질의 재활보조기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 지정 원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 종사자의 확보정도 및 신기술 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 따라서 우수 재활보조업체는 제조업에 한정하도록 하고, 판매업체는 제외함.
- 아울러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는 크게 의지·보조기 등 맞춤형 제조업체와 휠체어, 목발 등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함.
 - － 의지·보조기 업체의 경우 업체의 규모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를 기초로 5인 미만, 10인 미만과 10인 이상으로 구분함.
- 따라서 초소형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소형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중대형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그리고 우수 대량생산업체 등 4가지의 유형별로 우수업체를 지정함.
 - － 이것은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 업체가 영세한 현실에서 이들에게도 우수업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3.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 지정 기준

-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

- 업체의 안정성 측면에서 제조실적과 재무건전성 측정
 - 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 지정대상업체의 순위에서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총 자산 중 자기자본 비율: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연구개발 노력
 -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특허 및 실용신안 건수는 특허의 경우 건당 5점을, 실용신안의 경우 건당 1점을 부여한 후 총점을 계산한 후 이 총점을 토대로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획득여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술표준원, ISO 등으로부터 인증서 획득 시 건별로 1점을 부여한 후 총점을 계산한 후 이 총점을 토대로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연구개발비용의 수주여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로부터 수주 시 건별로 3점, 기타 민간으로부터 획득 시 1점을 부여한 후 총점을 계산한 후 이 총점을 토대로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업체의 시설 및 환경
 - 의지·보조기 업체: 별도로 독립된 공간의 채형실 및 fitting room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10점,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8점, 그리고 하나도 없는 경우 6점을 부여
 - 대량생산시설: 재활보조기구 제작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상·중·하로 나뉘어 평가하고 상이면 10점, 중이면 8점, 하면 6점을 부여
 - 순이익 중 설비투자비율: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인력의 전문성
 - 의지·보조기 업체: 의지·보조기 기사 확보 비율로 측정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토대로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대량생산업체: 공학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로 측정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토대로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전체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 각각의 직원의 근무기간 월을 산정한 후 평균을 구한 후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사회적 기여도
 - 업체의 고객 중에서 의료급여를 통해 재활보조기구가 지급된 고객비율: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직원의 장애인 고용률: 상위 25%는 5점, 중간 50%는 4점, 그리고 하위 25%는 3점을 부여
 - 고객만족도 부문으로서 전화조사를 통해 측정
 - 전화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고객의 전화번호를 최소한 100명을 확보한 후 이 중 임의로 30명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실시
 - 고객만족도에는 직원의 친절도, 제품 기능에 대한 만족도, 제품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가격만족도, A/S 만족도를 가지고 측정하며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
- ☐ 이러한 지정 기준에 의한 평가는 최대 100점, 최소 50점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평가 결과 90점 이상(안)을 받았을 경우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로 지정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업체신청서류에서 1년 간의 실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업체의 지정은 매년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평가절차

- ☐ 평가는 평가대상 업체 내부자에 의한 자체평가와 재활보조기구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발된 전문평가단에 의한 현장평가로 구분함.
- 자체평가의 과정은 자체평가자 교육, 자체평가서 발송,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서 접수, 자체평가서 검토의 순으로 진행함.

- 자체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업체 내부 평가자의 공통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체평가자 교육의 대상은 각 평가 대상업체 종사자 중 직접 자기 업체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자(주로 업체 대표 또는 총무)임.
- 자체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된 후 재활보조기구업체 평가단에서는 각 평가대상 업체에 자체평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 자체평가서를 받은 재활보조기구업체에서는 자체평가자가 업체대표의 책임 하에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완료 후 평가서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명, 작성책임자명, 직인 또는 서명, 작성일 등을 기입함.
- 이 과정이 완료된 평가서는 전체를 복사하여 원본은 재활보조기구업체 평가단으로 발송하고, 업체에서 사본을 보관하여 현장평가시 활용함.
- 평가단에서는 접수된 자체평가서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최종 검토가 완료된 각 업체의 자체평가서는 현장평가시 평가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는 평가자의 수(3부)에 맞게 복사한 후 원본은 별도로 보관함.
- 현장평가단의 구성은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관련 전문가 1인, 업체 실무자 1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1인 등 총 3인을 1개 팀으로 하여 현장평가단 구성을 원칙으로 함.
- 평가팀은 3인으로 구성되지만, 평가업체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각 평가팀의 팀장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적은 학계에서 선발된 평가자로 함.

6. 평가결과 활용방안

- 우수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지원 방향은 기본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정부의 보호 하에 두면 자유 경쟁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으므로
- 업체간 경쟁이라는 자유시장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 노력의 결실로서 나타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 지정서를 배부하고 이를 대중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재활보조기구의 사용을 권장하는 간접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리고 유형별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업체가 매우 영세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수업체가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장려금의 지원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시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금융지원, 즉, 저리융자, 대출을 위한 은행보증, 부도방지금의 마련과 함께 첨단산업분야의 민간기업들이 재활보조기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에는 영세업체가 생산하기에 설비비용 부담이 과중한 품목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품목들의 국산화 및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방안

1. 재활보조기구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산업은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분야로서 향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장애범주의 지속적인 확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함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활보조기구 산업 육성 기본방향

-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함.
 -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활보조기구 업체들도 육성하게 되는 등 유효시장 확대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도모함.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재활보조기구의 고도화를 도모함.
- 재활보조기구 생산 업체의 조직화나 상호 교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
-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함.

2. 재활보조기구 산업 육성정책의 세부 과제

가. 유효수요 확대 정책의 추진

- ☐ 보험급여 기준가격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아울러 급여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유효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 간접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 예컨대,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장루 품목 등에 대한 급여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수요 증대에 따른 업체의 생산 향상과 연계됨.

나.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고도화 전략

- ☐ 재활보조기구 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기술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교류를 통해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재활원, 산재의료원 재활공학연구소, 보훈병원 등에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 개별 재활보조기구 업체는 이들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이들 기관이 교육훈련 기회를 만들어 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다만, 이들 기관이 일반 영세 재활보조기구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까지 제작하여 일반 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세 업체의 존재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 소비자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재활보조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보장구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재활보조기구 동향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재활보조기구 잡지의 발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활보조기구 산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실용성이나 사업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계 전체적으로 품목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고, 정보 교류를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전시회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ABLEDATA나 일본의 TAIS(Technical Aids Information System)과 같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이미 개발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제도를 정비해야 함.
 - 국립재활원에 재활보조기구 연구소를 설립하여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 시험방법을 표준화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재활보조기구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는 분야임.

- 일본의 경우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급여 확대는 후생노동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 재활보조기구 또는 일상생활용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복지용구

산업의 활성화는 주로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재활보조기구 산업은 상무부 산업안전국에서 산업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처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과 재활보조기구 및 이 분야의 육성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활보조기구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됨.

다. 정보 교류의 확대

- 현재까지 재활보조기구의 시장 규모에 관한 적절한 정의나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활보조기구 관련 정책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도움없이 추진되어 왔음.
 -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욕구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재활보조기구 시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 정기적인 재활보조기구 사용실태 및 수요조사, 재활보조기구 의 생산 및 유통 등 산업실태조사, 그리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및 보훈처 등 공적 급여제도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실적 등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함.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급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재활보조기구 업체 회원간의 정보교류, 공동전시, 소비자상담·자문, 대정부 정책건의와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인 제작기술의 보급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한국보장구협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재활보조공학산업협회(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Techno-Aid 협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보장구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회원업체가 거의 대부분 의지, 보조기업체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교류나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업체들의 협회운영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한국보장구협회를 한국재활보조기구협회(가칭)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의자·보조기업체뿐만 아니라 2002년 9월 정부가 공포한 바 있는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에 포함되는 모든 업체를 망라한 새로운 재활보조기구 협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한 첨단기술 습득, 선진국으로의 기술연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재활보조기구 정보지나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국제 재활보조기구 전시회의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재활보조기구협회(가칭)를 법정단체화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라. 경제적 지원정책의 강화

- 재활보조기구는 특성상 소량 다품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산업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어울리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문제는 기술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재활보조기구의 판로가 적어서 제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력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작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책이 필요함.
- 대부분 영세한 상태에 있는 재활보조기구 업체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함.
 - 금융지원에 의한 업체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성장이 유망한 우수업체들을 지정하여 중점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저리융자, 장려금 지급, 대출을 위한 은행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아울러 재활보조기구 가운데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스쿠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관세면제범위 확대 등이 필요함.
- 조세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기술신용 보증지원, 구매지원, 기술정보지원, 기술인력양성확보지원, 협동연구촉진, 중소기업기술지원, 기술개발촉진 지원시책, 연구개발조직의 육성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으나,
 - 재활보조기구 업체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업청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재활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